



의안번호

제215호

는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윌일	2023. 11. 15.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15호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15. 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

1. 제안이유

가. 행정안전부 2023년도 논산시 기준인력(지방의회 정책지원관) 3명 배정 나. 논산시의회 정책지원관(일반임기제 7급) 3명 배정 요청

2. 주요내용

가. 기준인력(국가정책) 정원 3명 반영 (총 1,123명 → 총 1,126명)

- 논산시의회 정원 3명 증원 (현행 22명 → 향후 25명)

※ 증원 3명(행정7 1명, 행정·사회복지7 1명, 행정·시설7 1명)

기관명	계급	현행	개정안	비고
	계	22	25	
	4급	1	1	
	5급	2	2	
논산시의회	6급	4	4	
	6급 7급 8급	7	10	3명 증원
	8급	6	6	
	9급	2	2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[기획감사실-11816(2023. 11 .3.)]

2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[복지정책과-33059(2023. 11 .3.)]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12943(2023. 11. 6.)]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10. 13. ~ 11. 2. (20일 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(☎041-635-3598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1,123명"을 "1,126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22명"을 "25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	서	성		명
입	자 치	행정고	가 장	김	일	규
- 안	인 /	나 팀	장	박	승	헌
자	담	당	자	김 (74	도 6-52	현 33)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[별표 6]

	총 계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구 분		소 계	본 청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	소계	의회 사무국
총 계	1,126	1,101		1,1	01		25	25
정무직 계	1	1	1					
시 장	1	1	1					
일반직 계	1,077	1,052		1,0)52		25	25
3급	1	1	1					
4급	5	4	3	1			1	1
5급	62	60	37	7	1	15	2	2
6급 이하	1,006	984	984				22	22
전문경력관	3	3		•	3			
별정직 계	4	4		4	4			
6급상당 이하	4	4		1	4			
연구직 계	4	4		,	4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4					
지도직 계	40	40	40					
지도관	4	4	4					
지도사	36	36		3	6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	제20조(정원의 총수)
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12</u>	<u>1,126</u>
<u>3명</u> 으로 하고, 이를 다음 각 호	<u>명</u>
와 같이 구분한다.	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: <u>22명</u>	2 <u>25명</u>
[增표 6]	【增五6】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 · 직렬별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	₹.A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구 분		소기	본 청	직속 기관	사업소	유면동	소계	의회 사무국
총계	1,123	1,101		1,	101		22	22
정무직 계	1	1	f					
시 장	-1	1	1					
일반직 계	1,074	1,052		1,	052	N 5	22	22
3급	1	1	1					
4 "1	5	4	3	1			1	19
5급	62	60	37	7	Î	15	2	2
6급이하	1,003	984		9	84		19	19
진문경력관	3	3		į,				
별정직 계	4	4)	4			
6급상당 이하	4	4		6	4			
연구직 계	4	4		8	4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	8				
지도작 계	40	40		1				
지도관	4	4		6				
지도사	36	36		3	36			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 · 직렬별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	善月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구 분		소 月	본정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	소기	의회 사무국
参月	1,126	1,101		1,	101		<u>25</u>	<u>25</u>
정무직 계	1	1	1					
시 장	1	W.	T.					
일반직 계	1,077	1,052		1,	052		<u>25</u>	<u>25</u>
3급	Ť	Ĭ	343					
4 -1	5	4	3	1			1	1
5급	62	60	37	7	1	15	2	2
6급 이하	1,006	984		9	84		22	22
전문경력관	3	3			3			
별정직 계	4	4			4			
6급상당 이하	4	4			4.			3
연구직 계	4	4			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Ä					
지도직 계	40	40		S				
지도관	4	4			4		ië.	e
지도사	36	36		8	36			

붙임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ㅇ 정원 증원(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)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단가로 산정하고 매년 보수인상률
3.0% 적용

나. 추계결과

ㅇ 5년 추가소요액: 796,370천원

(단위: 천원, 명)

구	世	1인기준 추가소요액	인원	금 액	연 도	합 계
합	계	50,000	3	150,000	5개년	796,370
일반임기 연 지		50,000	3	150,000	5개년	796,370

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김 일 규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서] 입	150,000	154,500	159,135	163,909	168,826	796,370
	시 비	150,000	154,500	159,135	163,909	168,826	796,370
서	출	150,000	154,500	159,135	163,909	168,826	796,370
	인 건 비						
	○ 보 수	150,000	154,500	159,135	163,909	168,826	796,370
7	내원 조달	150,000	154,500	159,135	163,909	168,826	796,370
	소 계						
의존	보조금						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150,000	154,500	159,135	163,909	168,826	796,370
자체	지방세	150,000	154,500	159,135	163,909	168,826	796,370
수입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						
	기 금						
공기	업 특별회계						
(채무	기 타 부담, 민자 등)						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 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- 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 - 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 - 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 -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 - 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